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사(공무직) 채용 공고

보건복지 관련 양질의 정책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국민의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보건복지상담센터 내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채용 개요

○ (채용 인원) 35명 이내

구분	지원 분야	채용예정 인원	담당업무
계		35명	
129 (보건복지 정책상담 분야)	소계	8명	
	사회복지정책상담팀	2명	○ 사회복지 관련 정책 상담
	노인장애인정책상담팀	2명	○ 노인·장애인 관련 정책 상담
	위기대응상담팀	3명	○ 아동·노인학대, 정신건강 등 상담
	위기대응상담팀(장애인)	1명	
109 (자살예방 상담 분야)	소계	27명	
	자살예방상담팀	26명	○ 자살예방 상담
	자살예방상담팀(장애인)	1명	

- ♠ 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담당업무 및 근무지는 최초 상기의 조건으로 선발하되, 센터 운영상 필요한 경우 담당업무 및 근무지는 변경될 수 있음
- ♠ 장애인 전형의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 일반 전형으로 채용 할 수 있음

○ (응시 자격)

구분	응시 자격 및 제출 서류
공통사항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정년 만60세)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원서는 채용분야 1곳에 1개만 접수 가능(중복 또는 복수 접수 불가)
장애인 전형 (위기대응·자살예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시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전형 모집 외의 다른 모집 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2. 근무 조건

○ (신 분)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

○ (시용계약기간) 최종합격자는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시용 종료 후 공무직 본계약 체결

구분	시용 근로계약 기간
사회복지정책상담팀 노인장애인정책상담팀	○ '24. 4. 1. ~ '24. 6. 30.까지(3개월)
위기대응상담팀 자살예방상담팀	○ '24. 4. 1. ~ '24. 5. 31.까지(2개월)

※ 시용 근로기간 등 근로계약 기간은 채용 절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계약기간) 시용 계약 종료 다음날~ 만60세(정년)

○ (근무 기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구분	지원 분야	근무지
129 (보건복지 정책상담 분야)	사회복지정책상담팀 노인장애인정책상담팀 위기대응상담팀	정부과천청사(129) ※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109 (자살예방 상담 분야)	자살예방상담팀	서울 당산(109) ※ 지하철 2호선 당산역

○ (근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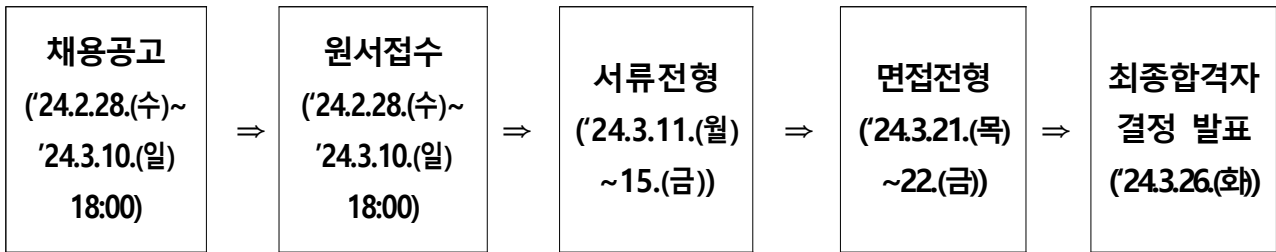
구분	근무 시간
사회복지정책상담팀 노인장애인지정책상담팀	○ 주 5일 근무(평일 09~18시) ※ 휴게시간 1시간 포함(법정)
위기대응상담팀 자살예방상담팀	○ 365일 24시간 5조 3교대 근무 ※ 휴게시간 1시간 포함(법정) ○ 근무 패턴(1유형 → 2유형 → 3유형, 순환 방식) • (1유형) "N" 3일 근무 후 2일 휴무 • (2유형) "E" 3일 근무 + "N" 1일 근무 후 2일 휴무 • (3유형) "D" 3일 근무 후 1일 휴무 ○ 근무 시간(3교대), 실 근무시간 8시간 • (D근무) 근무시간 07:00 ~ 16:00 • (E근무) 근무시간 13:00 ~ 22:00 • (N근무) 근무시간 22:00 ~ 07:00 ※ 근무 패턴 및 근무 시간 등은 센터 여건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급여 수준)

구분	급여 수준
사회복지정책상담팀 노인장애인지정책상담팀	○ 기본급 1,995,130원 (4대 보험 가입) ※ 제수당(근속수당,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중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성과급, 복지포인트 등은 별도 내부 기준에 따름
위기대응상담팀	○ 기본급 2,261,530원 (4대 보험 가입) ※ 제수당(근속수당,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중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성과급, 복지포인트 등은 별도 내부 기준에 따름
자살예방상담팀	○ 기본급 2,261,530원 (4대 보험 가입) ※ 제수당(근속수당, 가계지원비, 특수근무수당 등), 복리후생비(중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성과급, 복지포인트 등은 별도 내부 기준에 따름
★ 단, <u>시용근로계약기간 중에는 2024년 일반상담사 기본급(1,995,130원), 중식비(140,000원), 교통비(100,000원), 법정수당만 지급함</u>	

- ♠ 임금수준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됨에 따라, 예산운영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별도 지급
- ♠ 급여 및 기타 복리후생 등의 사항은 「2024년 보건복지상담센터 공무원 급여 지급기준」 등에 따름

3. 전형단계 및 일정



구분	일정	비고
i) 채용공고	‘24. 2. 28.(수) ~ ‘24. 3. 10.(일), 18:00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등 게시
ii) 응시원서접수	‘24. 2. 28.(수) ~ ‘24. 3. 10.(일), 18:00	응시원서 접수방법 참고
iii) 서류합격자 발표	‘24. 3. 15.(금), 11:00 이후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 개별 통지
iv) 면접시험	‘24. 3. 21.(목)~ ‘24. 3. 22.(금)	장소 및 시간 별도 통보
v) 최종합격자 발표	‘24. 3. 26.(화), 11:00 이후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 개별 통지
vi) 임용 예정일 (시용계약)	‘24. 4. 1.(월)	시용근로계약 체결
vii) 신원조회 등	‘24. 4월 초~5월 초	결격사유 등 확인 시 합격 취소
viii) 본계약	시용계약 종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본계약 체결

♣ 상기 일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채용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방법 및 제출 서류

□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원서 접수기간) ‘24. 2. 28.(수) ~ ‘24. 3. 10.(일), 18:00까지

※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에 공고

○ (접수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 (접수 이메일) nano1981@korea.kr

※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 서류 등

구분	제출 서류
전화상담원 (공무직)	○ 공통사항(필수 제출) - 응시원서 (붙임1) - 입사지원서 (붙임2) - 자기소개서 (붙임3)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 (붙임4) - 공정채용 확인서 (붙임5) -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 변경이력 필요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붙임1~5) “한글파일(HWP)” 1부 및 “서명된 스캔파일(주민등록초본 포함)” 각 1부 제출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점대상자 증빙서류 각 1부 (가점 항목당 해당자에 한함)

5. 우대 · 가점사항 및 결격사항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3조, 제26조)

□ 우대 및 가점사항 (원서접수 마감시까지 제출한 서류 기준)

○ 우대사항 (아래 우대사항이 있을 경우 입사지원서(붙임2)에 체크하고 증빙자료 제출)

채용분야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 사회복지정책상담팀(129)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소지자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업무 관련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직영근무 경력만 인정
■ 노인장애인정책상담팀(129)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소지자 ■ 수어통역사/수어통역 가능자(청인)	
■ 위기대응상담팀(129) ■ 자살예방상담팀(109)	■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소지자 ■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자격 소지자, 상담 및 심리계열 전공자	

○ **가점 사항** (아래 가점사항이 있을 경우 **입사지원서(붙임2)**에 체크하여 증빙자료 제출)

항목	내 용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 가장 유리한 1개의 내용에 대해서만 적용함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 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최대 1개의 내용에 대 해서만 가점 적용함

※ 가점 사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정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함. 법정가점과 사회형평가점은 합산할 수 있고, 가점의 총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법정가점에서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다만, 서류전형 적부요건에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면접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된 경우 최종 합격예정자가 채용 예정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채용자가 없을 수 있음

□ **결격 사유 없을 것**

-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공정채용기준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공정채용기준 제26조)

< 공정채용기준 상 채용결격사유 >

❶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❷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❸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6. 채용 방법

□ 서류전형

- 응시인원에 따라 응시서류의 적부 여부 또는 응시자의 직무수행 능력 등을 심사하여 적격 및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다만, 채용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지원자가 5배수 이상일 때는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가점사항,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자격증 등
- 서류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음
- 합격자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법정가점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며, 법정 가점을 적용하였음에도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서류전형은 동점자 전원 합격
-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하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통보

□ 면접전형(한글타자 능력테스트 포함)

- **(1차) 면접심사, (2차) 한글타자 능력테스트**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및 한글타자 능력테스트 실시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정
 - 평정요소 : 면접태도, 고객응대의 친절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설득력, 직무에 대한 기본소양 및 상황대처능력, 조직 및 업무적응력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심사 평정점수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1.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매우미흡' 평정
2.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매우미흡' 평정
3. 한글타자능력테스트 미통과자

* 한글타자 분당 200타 및 정확도 90% 이상(단, 장애인의 경우 분당 150타 및 정확도 90% 이상)

- 면접심사 결과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순위로 선발

- ① 법정가점, ② 사회형평가점, ③ 서류심사 총점수, ④ 자격증 점수, ⑤ 경력점수

○ 입사포기자, 시용 계약기간 중 결격사유 확인된 자 및 중도퇴사자 등이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 차순위자 중 적격자에 한하여 추가 합격자 선발 가능

- 예비합격자 인원수는 선발예정인원의 최대 2배수 내에서 운영하며,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시용근로계약 시작 후 1주일 이내로 함

○ 합격자 발표 : '24. 3. 26.(화) 11:00 이후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www.129.go.kr)

7. 응시자 유의사항

○ 필수 제출서류는 반드시 본 센터의 지정서식으로 작성하여 ①“(붙임 1~붙임3) 한글파일(HWP) 각 1부” 및 ②“서명 된 스캔본 각 1부”를 기타 증빙서류 등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미흡 시 접수 불가)

※ 필수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1), 입사지원서(붙임2), 자기소개서(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붙임4), 공정채용확인서(붙임5),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이력 필요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 사항 포함)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상의 경력사항 불일치 및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지원팀 미기재,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

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우대(자격증·경력) 및 가점사항(법정·사회 형평) 등의 관련 증빙자료는 원서접수일 마감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및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지원서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허위제출이 밝혀지는 경우, 신원조사 결과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 되는 경우,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경우, 기타 부정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 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등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9조에 따릅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내 채용서류 반환청구 시 이를 반환하고, 위 기간 내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만, 채용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성명 및 연락처 (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으며, 채용 관련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됩니다.
-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02-510-261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변경은 불가하며 **반드시** “한글파일(HWP) 1부” 및 “서명 된 스캔파일 1부” 제출

- (한글파일) “붙임1~붙임3” 작성분은 한글파일(HWP)로 제출
- (스캔파일) “붙임1~붙임5” (주민등록초본* 포함) “서명 후 스캔하여 1부로 묶어서 제출

* 주소변경 이력 필요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 사항 포함

○ 응시원서(붙임1)

- (주소 및 전화번호)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으로 기재하며, 휴대전화는 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미기재시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붙임2)

- (우대사항) 1년 이상 콜센터(국가·공공기관 직영) 근무 경력 및 관련 자격 사항에 한하여 기재 후 증빙자료 제출
- (가점사항) 법정가점(국가유공자 등) 및 사회형평가점 관련 사항에 한하여 기재 후 증빙자료 제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우대사항(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및 가점사항(법정 및 사회 형평)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원서접수 마감시까지 제출하여야 인정

○ 자기소개서(붙임3)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하되 지원동기, 경력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로 작성

붙임1

응시원서(공통)

[별지 제4호서식] 응시원서

응시원서

본인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관련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응시번호	< 미기재 >		
지원분야	ex) 사회복지정책상담팀 자살예방상담팀(장애인) 등 지원분야 기재	성명	(한글)
			(한자)
		복수국적 해당여부	
생 일	< 심사위원회에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생년은 미기재		
주 소	(☎) < 심사위원회에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전자우편			
전화(자택)		휴대전화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붙임2

입사지원서(공통)

입 사 지 원 서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1. 공통사항

지원분야 (중복지원 불가)	☐ 사회복지정책상담팀 ☐ 노인장애인정책상담팀 ☐ 위기대응상담팀 ☐ 위기대응상담팀(장애인) ☐ 자살예방상담팀 ☐ 자살예방상담팀(장애인)		응시번호	< 미기재 >	
성명	(한글)		병역사항	☐ 필면제 ☐ 미필 ☐ 면제 ☐ 해당없음	
가점 사항여부	법정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 5% ☐ 10%
	사회형평가점	☐ 장애인, ☐ 법정 저소득층(기초수급자·한부모), ☐ 북한이탈주민			

2. 우대사항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증 번호	자격 검정기관	
경력 (국가기관 등의 콜센터 1년 이상 경력만 기재)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00기업(00팀)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대리		☐ 전일제 ☐ 단시간
					☐ 전일제 ☐ 단시간

3. 경력 및 경험 사항 등(경력, 동아리 등 직무와 관련된 주요 활동 기입)

구분	소속 또는 조직	역할	경력 활동기간 (개월수)	경력·활동 내용
☐ 경력 ☐ 경험				
☐ 경력 ☐ 경험				
☐ 경력 ☐ 경험				
☐ 경력 ☐ 경험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3**자기소개서(공통)**

자 기 소 개 서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성 명		지원분야	ex) 사회복지정책상담팀 자살예방상담팀(장애인)
-----	--	------	-------------------------------

※ 휴면명조, 12pt, 검정, 줄간격 160%로 최대 2매까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응시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지원동기를 작성해 주십시오.**2. 살아오면서 부딪혔던 가장 큰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에 대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3.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상담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기소양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4. 지원 전 주요활동(경험, 경력 등)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2024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붙임4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공무원 근로자 신규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응시번호, 성명, 응시직급,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자격증 정보(자격증명, 취득일, 자격검정기관), 병역사항(군필여부), 경력정보, 전자메일, 학력정보 등	○본인확인 ○신규채용 심사 ○임용시 보수지급 관련 ○인사·노무관리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미채용자 : 180일 · 채용자 : 퇴직후 3년까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채용시험과 관련된 경우 10년 임용과 관련된 경우 30년

※ 응시자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장애인등록증,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수급자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정보	○본인확인 ○신규채용 심사 ○기타 인사·노무관리	· 미채용자 : 180일 · 채용자 : 퇴직후 3년까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채용시험과 관련된 경우 10년, 임용과 관련된 경우 30년

※ 응시자는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복수국적자, 경력,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응시요건, 증빙자료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 확인서를 발급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7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공개·활용합니다.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정보처리 목적 달성시까지
자격증, 경력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관련 개인정보 보유기관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정보처리 목적 달성시까지

※ 응시자는 위의 개인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공정채용확인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의 2에 따라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있음	없음
1. 본인은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2. 본인의 친인척이 보건복지부 혹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근무(퇴직 포함) 하고 있습니까?	☐	☐
3.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본인과 ()촌 이내이며, ()에 근무(한) (성명:)입니다.	☐	☐
4. 친인척 관계가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상기 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합격 취소,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